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_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_ 소송제기 현황

제3장 _ 소송 결과

제4장 _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_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제6장 _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 관련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데이터는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유목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언론분쟁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의 근거 내지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¹⁾한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 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판결 검색 시에 ① 정정보도 ② 반론보도 ③ 추후보도 ④ 보도&명예훼손 ⑤ 보도&초상 ⑥ 보도&음성 ⑦ 보도&사생활 ⑧ 보도&성명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다. 검색어 입력 결과, 판결 선고가 아닌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가. 2015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215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215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분석은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된 모든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²⁾도 포함되어 있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70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판결 분석에서 이 점을 감안했다. 그 결과, 소송건수 자체가 기준이 되는 분석도 있지만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매체별로 나누어 실시한 분석의 경우, 비록 소송 건으로는 하나이나 통계분석의 목적상 여러 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었음에 주의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70건이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617건

한편, 분석 대상 판결들 대부분이 하나의 청구가 아닌,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나 기사삭제청구+정정보도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가 병합된 것들이었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370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후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의 청구권별 총 건수는 617건이다.

2) 2015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6년 현재 상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하거나 2015년 이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의미한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15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 제기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소송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 제기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결과, 침해유형별 소송결과, 원고유형별 소송결과,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소송기간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분석 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구 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접수일자 및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4. 손해배상
	17-2. 반론보도	17-5. 기사삭제
	17-3. 추후보도	17-6. 해명광고 게재
원 · 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3. 3심
	18-2. 2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손해배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제목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6. 보도본문 길이
	34. 보도위치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하였다.
-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고위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³⁾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 ④ 공인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였다면 2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3)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방송 분류

- ①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⁴⁾를 포함하였다.
-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 ④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하였다.
예) 「SBS 스페셜」, 「생방송 오늘아침」 등

6)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일부승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또는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8)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하였다.
- ② 매체별로 별도 법인이 있거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예) 조선일보 - 조선닷컴 연대하여 2,000만원 → 조선일보 : 2,000만원 / 조선닷컴 : 2,000만원
- ③ 피고가 단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분류상 2개로 나누어진 경우는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반액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하였다.
예) 경향신문 - 경향닷컴 경향신문에 2,000만원 → 경향신문 : 1,000만원 / 경향닷컴 : 1,000만원
- ④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하였다.
- ⑤ 항소심과 상고심도 하급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4) 예) KBS전주방송총국, 대구MBC 등

제2장

소송제기 현황

2015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52.6%, 2심 35.3%, 3심 12.1%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13건(52.6%), 2심이 76건(35.3%), 3심이 26건(12.1%)이다.

〈표 1-1〉 심급별 건수

심 급	건 수	비율(%)
1 심	113	52.6
2 심	76	35.3
3 심	26	12.1
합 계	215	100.0

2. 상소율

항소율 70.8%, 상고율 48.7%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2심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113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80건으로 항소율은 70.8%로 나타났다. 2심 판결 76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37건으로 상고율이 48.7%였다.

〈표 1-2〉 상소율

심 급	건 수	상소건수	상소율(%)
1 심	113	80	70.8%
2 심	76	37	48.7%

3.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분석해 선호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53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117건(31.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3〉 청구별 건수

청 구 명	건 수	비율(%)
정 정	18	4.9
정정/반론	5	1.4
정정/반론/손해배상	33	8.9
정정/손해배상	117	31.6
정정/손해배상/기사삭제	11	3.0
정정/손해배상/기사삭제/해명광고 게재	4	1.1
정정/손해배상/보도금지	2	0.5
반 론	5	1.4
추후/손해배상	2	0.5
손해배상	153	41.2
손해배상/기사삭제	16	4.3
손해배상/기사삭제/보도금지	1	0.3
기사삭제	1	0.3
기사삭제/보도금지	1	0.3
보도금지	1	0.3
합 계	370	10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339건(54.9%), 정정보도청구는 190건(30.8%), 반론보도청구는 43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다.

〈표 1-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건 수	비율(%)
정정보도	190	30.8
반론보도	43	7.0
추후보도	2	0.3
손해배상	339	54.9
기사삭제	34	5.5
보도금지	5	0.8
해명광고 게재	4	0.7
합 계	617	100.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152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명예훼손 및 모욕이 24건(11.2%), 명예 및 신용훼손이 10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 수	비율(%)
명 예	152	70.7
명예/신용	10	4.6
명예/모욕	24	11.2
명예/모욕/초상	4	1.8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1	0.5
명예/초상	1	0.5
명예/초상/사생활	3	1.4
명예/초상/음성/사생활	1	0.5

침해유형	건 수	비율(%)
명예/성명	1	0.5
명예/사생활	4	1.8
명예/사생활/재산	1	0.5
명예/재산	3	1.4
신 용	1	0.5
모 욕	2	0.9
초 상	6	2.7
재 산	1	0.5
합 계	215	100.0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원고유형은 일반인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59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인물 38건(17.7%), 고위공직자 25건(11.6%), 기업 22건(10.2%), 일반단체 20건(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6〉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 수	비율(%)
개인	고위공직자	25	11.6
	공적인물	38	17.7
	일반 공무원	4	1.9
	일반인	59	27.4
단체	언론사	9	4.2
	국가기관	6	2.8
	지자체	6	2.8
	기업	22	10.2
	공공단체	2	0.9
	종교단체	14	6.5
	시민단체	7	3.3
	교육기관	2	0.9

원고유형	건 수	비율(%)
일반단체	20	9.3
정 당	1	0.5
합 계	215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매체유형은 언론사닷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매체가 207건(5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 62건(16.8%), 일간신문 50건(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유형	건 수	비율(%)
일간신문	50	13.5
주간신문	25	6.8
월 간 지	4	1.1
방 송	62	16.8
뉴스통신	22	5.9
인터넷매체	207	55.9
합 계	370	100.0

일간신문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5건(70.0%), 방송 중에는 케이블방송이 34건(54.8%)으로 각 매체유형별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매체의 경우, 언론사닷컴이 142건(68.6%), 인터넷신문 64건(30.9%) 등이었다.

〈표 1-8〉 일간지 유형별 건수

일간신문 유형	건 수	비율(%)
중앙종합	35	70.0
지역종합	12	24.0
경제일간	2	4.0
스 포 츠	1	2.0
합 계	50	100.0

〈표 1-9〉 방송 유형별 건수

방송 유형	건 수	비율(%)
지상파방송	28	45.2
케 이 블	34	54.8
합 계	62	100.0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인터넷매체 유형	건 수	비율(%)
인터넷신문	64	30.9
언론사닷컴	142	68.6
포 털	1	0.5
합 계	207	100.0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가장 많이 문제된 보도유형은 뉴스(방송)와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 매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문제가 된 보도유형을 살펴봤다. 그 결과, 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60건(8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 수	비율(%)
스트레이트	260	84.4
스트레이트/사설	7	2.3
스트레이트/사진	1	0.3
스트레이트/칼럼	3	1.0
사 설	11	3.6
칼 럼	3	1.0
인 터 뷰	2	0.6
사 진	18	5.9
광 고	2	0.6

보도유형	건 수	비율(%)
독자투고	1	0.3
합 계	308	100.0

한편, 방송 관련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 35건(56.5%), 시사·고발프로그램 13건(21.0%), 토론 10건(16.1%)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 수	비율(%)
뉴 스	35	56.5
뉴스/토론	1	1.6
고 발	13	21.0
교 양	3	4.8
토 론	10	16.1
합 계	62	100.0

8. 직위별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 건수 370건의 피고들을 해당 직위별로 분류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63건(44.0%), 언론사와 더불어 담당 기자까지 피소된 건이 76건(2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3〉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 수	비율(%)
언 론 사	163	44.0
언론사/대표	5	1.4
언론사/대표/국장	2	0.5
언론사/대표/국장/담당	3	0.8
언론사/대표/담당	5	1.4
언론사/국장	1	0.3

직위별 피고 구성	건 수	비율(%)
언론사/국장/담당	4	1.0
언론사/국장/비언론	1	0.3
언론사/부장/담당	3	0.8
언론사/담당	76	20.5
언론사/담당/비언론	10	2.7
언론사/담당/기타	1	0.3
언론사/비언론	37	10.0
대 표	17	4.6
대표/담당	6	1.6
국장/부장/담당	1	0.3
논설/비언론	1	0.3
담 당	31	8.4
담당/비언론	3	0.8
합 계	370	100.0

직위별 피고 분류를 다시 각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가 311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기자 또는 PD 143건(25.4%), 대표이사 38건(6.8%) 등이었다.

〈표 1-14〉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 수	비율(%)
언 론 사	311	55.3
대표이사	38	6.8
국 장	12	2.1
논 설	1	0.2
부 장	4	0.7
담당기자 (또는 담당 PD)	143	25.4
기 타	1	0.2
비 언 론	52	9.3
합 계	562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 소송기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언론소송 중 절반이 넘는 사건에서 원고 승소

2015년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승소율은 56.3%이다. 심급별로 원고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승소율 54.9%, 2심 59.2%, 3심 53.9%로 나타났다.

〈표 2-1〉 심급별 결과

심 급	원고승	원고패	계
1 심	62 (54.9)	51 (45.1)	113 (100.0)
2 심	45 (59.2)	31 (40.8)	76 (100.0)
3 심	14 (53.9)	12 (46.1)	26 (100.0)
합 계	121 (56.3)	94 (43.7)	215 (10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높지 않아

분석 대상 판결 215건 중 2심 74건(환송후심 2건 제외)과 3심 26건을 합산한 100건을 대상으로 원심

판결 유지여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86건 (86.0%)로 나타났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3.8%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92.3%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구 분	건 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 심	74 (100.0)	34 (46.0)	28 (37.8)	1 (1.3)	11 (14.9)
3 심	26 (100.0)	14 (53.8)	10 (38.5)	2 (7.7)	0 (0.0)
합 계	100(100.0)	48 (48.0)	38 (38.0)	3 (3.0)	11 (11.0)
		86 (86.0)		14 (14.0)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율 49.5%로 비교적 높아

215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소송 결과를 살펴본다. 그 결과,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정정보도청구 49.5%, 반론보도청구 37.2%, 손해배상청구 46.9% 등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다른 청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추후보도청구(2건)는 1건 인용, 1건 기각되었고, 해명광고 게재청구(4건)는 모두 기각되었다.

〈표 2-3〉 청구별 결과

청 구 명	원고승	원고패	계
정정보도	94 (49.5)	96 (50.5)	190 (100.0)
반론보도	16 (37.2)	27 (62.8)	43 (100.0)
추후보도	1 (50.0)	1 (50.0)	2 (100.0)
손해배상	159 (46.9)	180 (53.1)	339 (100.0)
기사삭제	16 (47.1)	18 (52.9)	34 (100.0)
보도금지	4 (80.0)	1 (20.0)	5 (100.0)
해명광고 게재	0 (0.0)	4 (100.0)	4 (100.0)
합 계	290 (47.0)	327 (53.0)	617 (100.0)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승소율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60.5%로 높게 나타났다. 명예·초상·성명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초상·음성·사생활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 다양한 침해유형에서의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지만 해당 건수가 1~3건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 예	92 (60.5)	60 (39.5)	152 (100.0)
명예/신용	5 (50.0)	5 (50.0)	10 (100.0)
명예/모욕	8 (33.3)	16 (66.7)	24 (100.0)
명예/모욕/초상	2 (50.0)	2 (50.0)	4 (100.0)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0 (0.0)	1 (100.0)	1 (100.0)
명예/초상	0 (0.0)	1 (100.0)	1 (100.0)
명예/초상/사생활	3 (100.0)	0 (0.0)	3 (100.0)
명예/초상/음성/사생활	1 (100.0)	0 (0.0)	1 (100.0)
명예/성명	1 (100.0)	0 (0.0)	1 (100.0)
명예/사생활	3 (75.0)	1 (25.0)	4 (100.0)
명예/사생활/재산	1 (100.0)	0 (0.0)	1 (100.0)
명예/재산	1 (33.3)	2 (66.7)	3 (100.0)
신 용	0 (0.0)	1 (100.0)	1 (100.0)
모 욕	2 (100.0)	0 (0.0)	2 (100.0)
초 상	1 (16.7)	5 (83.3)	6 (100.0)
재 산	1 (100.0)	0 (0.0)	1 (100.0)
합 계	121 (56.3)	94 (43.7)	215 (100.0)

※ ()안의 숫자는 %

5. 원고유형별 결과

공적 인물 승소율 57.9%에 이르러, 고위공직자는 40.0%에 그쳐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고위공직자 40.0%, 공적 인물 57.9%, 일반인 54.2% 등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에는 언론사 77.8%, 기업 54.5%, 종교단체 35.7% 등의 수치를 보였다.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개인	고위공직자	10 (40.0)	15 (60.0)	25 (100.0)
	공적인물	22 (57.9)	16 (42.1)	38 (100.0)
	일반 공무원	3 (75.0)	1 (25.0)	4 (100.0)
	일반인	32 (54.2)	27 (45.8)	59 (100.0)
단체	언론사	7 (77.8)	2 (22.2)	9 (100.0)
	국가기관	4 (66.7)	2 (33.3)	6 (100.0)
	지자체	4 (66.7)	2 (33.3)	6 (100.0)
	기업	12 (54.5)	10 (45.5)	22 (100.0)
	공공단체	1 (50.0)	1 (50.0)	2 (100.0)
	종교단체	5 (35.7)	9 (64.3)	14 (100.0)
	시민단체	6 (85.7)	1 (14.3)	7 (100.0)
	교육기관	2 (100.0)	0 (0.0)	2 (100.0)
	일반단체	13 (65.0)	7 (35.0)	20 (100.0)
	정당	0 (0.0)	1 (100.0)	1 (100.0)
합계		121 (56.3)	94 (43.7)	215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6〉 공적 인물의 결과

공적인물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정치인	2 (66.7)	1 (33.3)	3 (100.0)
전문인	8 (53.3)	7 (46.7)	15 (100.0)
언론인	0 (0.0)	6 (100.0)	6 (100.0)
연예인	3 (75.0)	1 (25.0)	4 (100.0)
예체능인	3 (100.0)	0 (0.0)	3 (100.0)
기타 유명인	6 (85.7)	1 (14.3)	7 (100.0)

공적인물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합 계	22 (57.9)	16 (42.1)	38 (100.0)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지역일간지 상대 원고승소율 비교적 높게 나타나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건수를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간신문 60.0%, 인터넷매체 50.2%, 월간지 50.0%, 방송 4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매체유형별 소송결과

매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일간신문	34 (68.0)	16 (32.0)	50 (100.0)
주간신문	15 (60.0)	10 (40.0)	25 (100.0)
월간지	2 (50.0)	2 (50.0)	4 (100.0)
방송	30 (48.4)	32 (51.6)	62 (100.0)
뉴스통신	9 (41.0)	13 (59.0)	22 (100.0)
인터넷매체	104 (50.2)	103 (49.8)	207 (100.0)
합 계	194 (52.4)	176 (47.6)	370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유형별 소송결과

일간신문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20 (57.1)	15 (42.9)	35 (100.0)
지역종합	11 (91.7)	1 (8.3)	12 (100.0)
경제일간	2 (100.0)	0 (0.0)	2 (100.0)
스포츠	1 (100.0)	0 (0.0)	1 (100.0)
합 계	34 (68.0)	16 (32.0)	50 (100.0)

※ ()안의 숫자는 %

일간신문에 대한 원고승소율을 세부 유형별로 다시 살펴봤다. 중앙종합일간지의 원고승소율이

57.1%인데 비해 지역종합일간지가 91.7%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한 원고 승소율은 39.3%, 케이블이 55.9%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56.3%, 언론사닷컴은 47.9%로 분석됐다.

〈표 2-9〉 방송 유형별 소송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11 (39.3)	17 (60.7)	28 (100.0)
케 이 블	19 (55.9)	15 (44.1)	34 (100.0)
합 계	30 (48.4)	32 (51.6)	62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소송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36 (56.3)	28 (43.7)	64 (100.0)
언론사닷컴	68 (47.9)	74 (52.1)	142 (100.0)
포 털	0 (0.0)	1 (100.0)	1 (100.0)
합 계	104 (50.2)	103 (49.8)	207 (10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와 뉴스(방송) 상대 원고승소율 비교적 높아

분석 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370건을 방송 외 매체 308건, 방송 매체 62건으로 나눈 후, 각 매체에 따른 보도유형별 소송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 외 매체의 경우, 칼럼을 상대로 한 원고승소율이 100%, 스트레이트 및 사설 71.4%, 스트레이트 및 칼럼 66.7%, 스트레이트 기사 58.5%로 스트레이트 관련 보도유형의 승소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스트레이트 기사는 언론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보도유형이기도 하다. 방송매체의 경우에는 토론 프로그램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60.0%로 가장 높았고 뉴스에서의 원고 승소율이 57.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152 (58.5)	108 (51.5)	260 (100.0)
스트레이트/사설	5 (71.4)	2 (28.6)	7 (100.0)
스트레이트/사진	0 (0.0)	1 (100.0)	1 (100.0)
스트레이트/칼럼	2 (66.7)	1 (33.3)	3 (100.0)
사 설	1 (9.1)	10 (90.9)	11 (100.0)
칼 럼	3 (100.0)	0 (0.0)	3 (100.0)
인 터 뷰	0 (0.0)	2 (100.0)	2 (100.0)
사 진	0 (0.0)	18 (100.0)	18 (100.0)
광 고	1 (50.0)	1 (50.0)	2 (100.0)
독자투고	0 (0.0)	1 (100.0)	1 (100.0)
합 계	164 (53.3)	144 (46.7)	308 (100.0)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 스	20 (57.1)	15 (42.9)	35 (100.0)
뉴스/토론	0 (0.0)	1 (100.0)	1 (100.0)
고 발	3 (23.1)	10 (76.9)	13 (100.0)
교 양	1 (33.3)	2 (66.7)	3 (100.0)
토 론	6 (60.0)	4 (40.0)	10 (100.0)
합 계	30 (48.4)	32 (51.6)	62 (100.0)

※ ()안의 숫자는 %

8. 소송기간

3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보도게재 청구사건 비율 8.7%에 불과

언론소송에서는 결과에 있어서의 승패 외에도 소송 진행의 신속함 역시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소송 개시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즉 소송기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의 상당수의 사건들이 6개월을 초과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7 (6.2%)	18 (15.9%)	50 (44.2%)	31 (27.4%)	7 (6.2%)	113 (100.0%)
2 심	1 (1.3%)	17 (22.4%)	42 (55.3%)	16 (21.1%)	0 (0.0%)	76 (100.0%)
3 심	11 (42.3%)	9 (34.6%)	1 (3.8%)	2 (7.7%)	3 (11.5%)	26 (100.0%)
합 계	19 (8.8%)	44 (20.5%)	93 (43.3%)	49 (22.8%)	10 (4.7%)	215 (100.0%)

특히, 법률에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보도게재 청구 사건의 1심에서도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보도게재 청구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이상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 심	6 (8.7%)	14 (20.3%)	29 (42.0%)	18 (26.1%)	2 (2.9%)	69 (100.0%)
2 심	0 (0.0%)	9 (24.3%)	23 (62.2%)	5 (13.5%)	0 (0.0%)	37 (100.0%)
3 심	5 (31.3%)	5 (31.3%)	1 (6.3%)	2 (12.5%)	3 (18.8%)	16 (100.0%)
합 계	11 (9.0%)	28 (23.0%)	53 (43.4%)	25 (20.5%)	5 (4.1%)	122 (100.0%)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분석 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합산한 건수가 617건이라는 점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 사건들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336건⁵⁾이다. 이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석 유목 중에서 손해배상사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경우,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적인 평균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왜곡된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평균 외에 손해배상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중앙값⁶⁾과 최빈액⁷⁾을 함께 조사하였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승소율 47.3%

분석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336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59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7.3%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청구권을 포함한, 전체 언론소송에서의 원고승소율(56.3%)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5) 손해배상 청구 사건 339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코딩하기 부적절한 3건을 제외하였다.

6)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7)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336 (100.0)	159 (47.3)	177 (52.7)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1억 2,244만 원

중앙값 8천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이상 사건 비중 46.7%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고액, 최빈액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2,244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8천만 원, 최빈액은 1억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336건 중 1억 원 이상인 고액 청구 사건이 157건(46.7%)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15억 원, 최저액은 2백만 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건수	청구액(원)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336		122,446,925	80,000,000	100,000,000	2,000,000	1,5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1,073만원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언론사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159건이다. 이들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1,073만 원, 중앙값은 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3백만 원이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약 4억 2,730만 원으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손해 중 40% 정도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다.⁸⁾

한편,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 중 2심 판결은 72건, 3심 판결은 13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85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법원이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했는지를 살펴보았다. 2심

8)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000602 판결

법원이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52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가 27건, 감액한 경우가 11건으로 나타났다. 3심의 경우, 대법원은 13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건수	인용액(원)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159		10,730,226	5,000,000	3,000,000	300,000	427,306,000

4. 인용액 분포

절반 넘는 사건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 원 이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159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89건(56.2%)으로 가장 많았으며,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32건(20.2%),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28건(17.6%),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6건(4.0%), 5천만 원 초과가 3건(2.0%)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건수	인용액(원)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1천만	1천만 초과~2천만	2천만 초과~5천만	5천만~
159 (100.0)		89 (56.2)	32 (20.2)	28 (17.6)	6 (4.0)	3 (2.0)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모욕과 함께 명예훼손이 문제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상대적으로 낮아

손해배상청구 사건 336건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했다. 침해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50.6%로 나타났으며, 인용액 중앙값은 425만원이었다. 명예와 신용이 함께 침해된 경우, 원고승소율은 63.6%, 인용액 중앙값은 5백만 원이었다. 명예훼손과 함께 모욕이 문제된 경우, 원고승소율은 37.1%로 떨어졌으며 인용액 중앙값은 5백만 원이었다.

〈표 3-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 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인용액 중앙값
명 예	233	118	50.6	7,828,814	4,250,000
명예/신용	11	7	63.6	9,285,714	5,000,000
명예/모욕	35	13	37.1	5,153,846	5,000,000
명예/모욕/초상	5	2	40.0	10,000,000	10,000,000
명예/모욕/초상/성명/사생활	1	0	0.0	-	-
명예/초상	1	0	0.0	-	-
명예/초상/사생활	5	5	100.0	15,000,000	15,000,000
명예/초상/음성/사생활	1	1	100.0	7,000,000	7,000,000
명예/성명	2	2	100.0	11,500,000	11,500,000
명예/사생활	4	3	75.0	16,000,000	14,000,000
명예/사생활/재산	1	1	100.0	8,000,000	8,000,000
명예/재산	4	1	25.0	20,000,000	20,000,000
신 용	2	0	0.0	-	-
모 욕	3	3	100.0	5,000,000	6,000,000
초 상	26	2	7.7	3,500,000	3,500,000
재 산	2	1	50.0	427,306,000	427,306,000
합 계	336	159	47.3	10,730,226	5,0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손해배상 원고승소율 일반 언론소송과 유사하게 시민단체, 언론사, 공적인물 등에서 높게 나타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일반 언론소송에서의 승소율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83.3%), 언론사(77.8%), 공적인물(50.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손해배상의 원고유형별 인용액 중앙값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공적인물이 5백만 원, 고위공직자는 650만 원이었다. 단체의 경우, 시민단체가 5백만 원, 언론사가 45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표 3-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 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인용액 중앙값
개 인	고위공직자	36	13	36.1	7,000,000	6,500,000
	공적인물	55	28	50.9	6,857,143	5,000,000
	일반 공무원	7	3	42.9	26,666,667	6,000,000
	일 반 인	120	53	44.2	28,000,000	5,000,000
단 체	언 론 사	9	7	77.8	10,928,571	4,500,000
	국가기관	1	0	0.0	-	-
	지 자 체	4	2	50.0	7,500,000	7,500,000
	기 업	31	19	61.3	11,000,000	5,000,000
	공공단체	1	0	0.0	-	-
	종교단체	24	4	16.7	1,000,000	1,000,000
	시민단체	12	10	83.3	5,700,000	5,000,000
	교육기관	3	2	66.7	6,000,000	6,000,000
	일반단체	30	18	60.0	7,222,222	3,000,000
	정 당	3	0	0.0	-	-
합 계		336	159	47.3	10,730,226	5,0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건 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인용액 중앙값
	정 치 인	3	2	66.7	17,500,000	17,500,000
	전 문 인	24	11	45.8	4,181,818	2,500,000
	언 론 인	10	0	0.0	-	-
	연 예 인	8	6	75.0	7,666,667	6,500,000
	예체능인	3	3	100.0	3,666,667	3,000,000
	기타 유명인	7	6	85.7	9,000,000	9,000,000
합 계		55	28	50.9	6,857,143	5,0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인용액 중앙값 방송이 일간신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56.7%, 지상파방송이 40.7%, 언론사닷컴이 42.3% 등으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 중앙값은 일간신문 5백만 원, 방송이 1,175만 원, 인터넷매체 450만 원 등이다.

〈표 3-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인용액의 중앙값
일간	중앙종합	30	17	56.7	7,382,353	5,000,000
	지역종합	11	9	81.8	8,250,000	10,000,000
	경제일간	2	2	100.0	1,500,000	1,500,000
	스 포 츠	1	1	100.0	5,000,000	5,000,000
	소 계	44	29	65.9	7,163,793	5,000,000
방송	지상파방송	27	11	40.7	12,545,455	8,000,000
	케 이 블	31	17	54.8	16,911,765	12,000,000
	소 계	58	28	48.3	15,196,429	11,750,000
주간신문		22	12	54.6	5,333,333	4,500,000
월 간 지		4	2	50.0	3,000,000	3,000,000
뉴스통신		22	7	31.8	10,214,286	5,0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55	26	47.3	6,307,692	4,000,000
	언론사닷컴	130	55	42.3	13,951,927	5,000,000
	포 텔	1	0	0.0	-	-
	소 계	186	81	43.6	11,498,222	4,500,000
합 계		336	159	47.3	10,730,226	5,000,00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두 건 중 한 건에서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손해배상청구 336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66건(49.4%)이었다. 이 중 피고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83건(50.0%)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52.7%보다 2.7% 낮은 수치이다.

〈표 3-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건수	언론인 피고 사건	언론인 승	언론인 패
336	166 (100.0)	83 (50.0)	83 (50.0)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 승소 원인의 상당수는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손해배상청구 336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77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보았다. 명예훼손의 경우, 보도의 공익성 및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45건(25.4%)으로 나타났다.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한 사례도 15건(8.5%)이나 되었고,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가 6건(3.4%)이었다. 그 밖에 특징적인 사건으로는 발언한 당사자(패널)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생방송이라는 이유로 언론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⁹⁾가 1건 있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24건 중 6건은 당사자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18건은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의 주관사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의 초상권 침해 여부까지 언론사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언론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¹⁰⁾이다.

9) 종합편성채널의 생방송을 통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만 방송사의 경우는 고의 및 과실이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2014가합586479).

1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주관사가 제공한 기사에서 거기에 포함된 사진이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인지 여부까지 언론사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2013가단5096557).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명예훼손	불 특 정	6	3.4
	불특정/공익/진실성/상당성	1	0.6
	사실적시 없음	15	8.5
	사실적시 없음/공익/진실성	1	0.6
	사실적시 없음/공익/진실성/상당성	1	0.6
	평가저하 아님	2	1.1
	평가저하 아님/공익	2	1.1
	평가저하 아님/공익/진실성	1	0.6
	공 익	7	4.0
	공익/진실성	45	25.4
	공익/진실성/상당성	17	9.6
	공익/상당성	29	16.2
	진 실 성	17	9.6
	진실성/상당성	4	2.3
	기 타	2	1.1
신용훼손	공익/진실성/상당성	2	1.1
초 상 권	동 의	6	3.4
	기 타	18	10.2
재 산 권	기 타	1	0.6
합계		177	100.0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절반에서 원고 승소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617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90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96건으로 원고승소율은 50.5%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청구건수	원고일부승	원고패
190 (100.0)	96 (50.5)	94 (49.5)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 승패의 관건은 보도의 진실성 증명 여부에 있어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한 사건(94건)에서 기간도과로 각하한 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92건)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51건(55.4%)이었고, 사실적 주장이 부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11건(12.0%)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13건의 경우, 대부분 민법상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한 정정보도청구¹¹⁾였고 이 경우에는 보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되었다.

11) 정정보도청구 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과 언론중재법(귀책 사유 불요)을 기반으로 한 것 두 종류가 있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 수	비율(%)
개별연관 부정	4	4.4
개별연관 부정/사실주장 아님/진실성 인정	2	2.2
사실주장 아님	11	12.0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진실성 인정	4	4.4
사실주장 아님/진실성 인정	6	6.5
지엽말단/진실성 인정	1	1.1
진실성 인정	51	55.4
기 타	13	14.0
합 계	92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2/3에서 원고 패소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43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이 16건, 원고승소율은 37.2%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5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소송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43 (100.0)	16 (37.2)	27 (62.8)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명백히 진실에 반하거나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한 반론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43건 중 기각된 사건은 27건이었다. 기각 사유는 반론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8건,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가 6건,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이어서 기각된 경우가 5건이었다.

〈표 4-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 수	비율(%)
사실주장 아님	6	22.2
지엽말단	5	18.5
기 반론행사	2	7.4
사실에 반함	8	29.7
광고 목적	3	11.1
기 타	3	11.1
합 계	27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 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105건이다. 이 중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게재하도록 판결한 건은 6건으로서 보도 게재를 명한 총 건수는 111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20건, 주간지 8건, 월간지 2건, 방송 18건, 뉴스통신 3건, 인터넷매체 60건으로 나타났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별로는 정정보도가 94건, 반론보도 16건, 추후보도가 1건이었다.

〈표 4-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 후	계
일간신문	18	2	-	20
주간신문	8	-	-	8
월 간 지	2	-	-	2
방 송	16	2	-	18
뉴스통신	-	2	1	3
인터넷매체	50	10	-	60
합 계	94	16	1	111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위치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한 비율 84.8%,

1면 혹은 방송 첫머리 게재 비율도 높아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 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89건(8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6건(5.7%)에 불과했다.

〈표 4-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건 수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89	84.8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6	5.7
명시하지 않음	1	1.0
알 수 없음	9	8.5
합 계	105	100.0

매체별로 구체적인 보도위치를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14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12건,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게시되도록 한 사례가 45건으로 나타났다.

〈표 4-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구분	보도위치	건 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14	50.0
	1면 외	13	46.4
	명시하지 않음	1	3.6
합 계		28	100.0
방송	첫머리	12	66.7
	후반	2	11.1
	끝	1	5.6
	명시하지 않음	3	16.6
합 계		18	100.0
인터넷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45	76.3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음	14	23.7
합 계		59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정정보도문의 형식 대체로 정형적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하였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59건(56.2%)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건 수	비율(%)
정정보도문	31	29.5
반론보도문	6	5.7
추후보도문	1	1.0
...에 대한 정정보도문	55	52.4
...에 대한 반론보도문	4	3.8
바로잡습니다	4	3.8
일반기사	3	2.8
기 타 ¹²⁾	1	1.0
합 계	105	100.0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500자 초과가 36건(3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하가 33건(31.4%),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18건(17.1%),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7건(16.2%)으로 나타났다.

〈표 4-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건 수	비율(%)
300자 이하	33	31.4
301~400자	17	16.2
401~500자	18	17.1
500자 초과	36	34.3
알 수 없음 ¹³⁾	1	1.0
합계	105	100.0

12) 주문 :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2014가단201764)

13) 주문 :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2014가단201764)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전체 언론분쟁 사건 중 법원에서 처리되는 비율 약 13%

2015년 판결의 매체별 건수 370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617건 중에서 기사삭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반론·추후·손배 네 가지 청구권 관련 사건(총 574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약 13%의 사건만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조정경유 비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전체 언론분쟁 건수 (A+B)	2,717 (100.0%)	3,285 (100.0%)	3,789 (100.0%)	9,791 (100.0%)
조정 건수(A)	2,433 (89.5%)	2,931 (89.2%)	3,319 (87.6%)	8,683 (88.7%)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판결 건수 (B)	284 (10.5%)	354 (10.8%)	470 (12.4%)	1,108 (11.3%)
조정을 거친 판결 건수 (C)	64 (2.4%)	80 (2.4%)	104 (2.7%)	248 (2.5%)
법원 판결 건수 (B+C)	348 (12.8%)	434 (13.2%)	574 (15.1%)	1,356 (13.8%)

* 건수 산정 : 정정·반론·추후·손배 청구권별 산정 (기사삭제, 게재금지 등 제외)

* 2014년 조정신청 건수의 경우, 총 19,048건 중 대량 사건 제외

* 2015년 조정신청 건수의 경우, 총 5,227건 중 대량 사건 제외

* 전체 언론분쟁 건수 : 판결 수집 건수를 전수조사로 전제한 경우임

* 법원 판결 건수는 기사삭제, 게재금지 청구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법원 평균 인용액 대비 15% 수준에 그쳐

2015년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

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160만 원, 중앙값은 1백만 원으로 나타난 반면,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1,073만 원, 중앙값은 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¹⁴⁾

〈표 5-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100	1,602,000	1,000,000	500,000	4,000,000
인용액	159	10,730,226	5,000,000	300,000	427,306,000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2015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104건¹⁵⁾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소송결과를 원고승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6.0%

우선, 위원회에서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47건으로 이 사건들에 있어서의 원고 승소율은 66.0%(3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들 중 피신청인 측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승소율은 8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판결 결과	계	원고승	원고패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7	2	5
		피신청인 이의신청	32	27	5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8	2	6
		조정불성립결정	48	37	11
		기 각	2	0	2
		취 하	7	6	1
		합 계	104	74	30

14)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정도라면 의미 부여를 하기 바란다.

15) 위원회에서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나 기각, 각하 결정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최고 인용액 1,400만 원으로 위원회 2천만 원 보다 적어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분쟁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소가 자동으로 제기된 사건(총 6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한 평균액을 살펴보면 위원회와 법원이 5백만 원선으로 유사한 액수를 보였다.

최고액 측면에서는 위원회에서 2천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법원에서 1,400만 원만 인용되는 등 위원회가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6	5,083,333	2,500,000	1,000,000	20,000,000
인용액	6(2)	5,000,000	4,500,000	0	14,000,000

* 괄호는 위원회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

한편,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2건을 제외하고 인용된 사건의 평균액만 분석하면 법원이 750만 원으로 약 508만 원인 위원회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또,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서 인용된 동일 사건 4건에 대한 조정액 및 인용액을 분석하면 위원회 평균액이 675만 원으로 법원 인용액과의 격차가 좁혀진다. 최저액은 위원회가 1백만 원, 법원이 3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사건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6	5,083,333	2,500,000	1,000,000	20,000,000
인용액	4	7,500,000	6,500,000	3,000,000	14,000,000

〈표 5-6〉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구 분	건 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4	6,750,000	3,000,000	1,000,000	20,000,000
인용액	4	7,500,000	6,500,000	3,000,000	14,000,000

〈표 5-7〉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결과 전체 목록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1	2014서울조정 1056, 1057 (각 손해)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명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운행 금 지 첫날 동정을 보도하면서 불 만을 토로하는 승객인 신청인 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표해 피 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기사수정 150만 원	기각 (성남지원 2014가소 31113, 31120)	기각 (수원지법 2015나 4440, 4457)	기각 (대법 2015다 231481, 231498)
2	2014서울조정 1021 (정정)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 업소가 칼국수 고명으 로 폐가용 달을 쓰는 것처럼 보 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정정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5640)	인용 정정 5천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009002)	계류 (대법 2015다 256374)
3	2014서울조정 500 (손배)	A	주식회사 뉴스한국	신청인이 아내의 종교를 증오 해 아내를 폭행하고 아동학대 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100만 원	인용 3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6863)	인용 3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4346)	인용 300만 원 (대법 2015다 33489)
4	2013서울조정 531 · 532 (정정 · 손해)	학교법인 A학원 외 2명	뉴데일리 주식회사	신청인 대학이 개혁을 요구하 는 교직원 30여명을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보도했으나, 그 징 계는 적법한 것이었다.	직권결정 - 반론	인용 반론 (서울중법 2013가합 54890)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4나 6796)	-
5	2013서울조정 410 (손배)	A	한국방송 공사	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불법 사행업소인 것처럼 보도해 피 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 1,000만 원 (서울남법 2013가단 33175)	인용 800만 원 (서울남법 2014나 5918)	인용 800만 원 (대법 2014다 82859)
6	2013서울조정 1253 · 1254 (정정 · 손해)	A 외 1명	주식회사 크리스천 투데이	목사인 신청인이 천주교인 이 혼녀와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왜곡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3가합 71345)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4나 21665)	인용 반론 (대법 2015다 21639)
7	2013서울조정 1599 (정정)	문화체육관광 부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 하고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 비를 문제 삼아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인용 정정 (서울서법 2013가합 12105)	인용 정정 (서울고법 2014나 2038713)	-
8	2014서울조정 4543 · 4544 (정정 · 손해)	A	주식회사 강남신문	신청인이 성형수술한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진로기록부 를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 반론 500만 원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62928)	인용 정정 2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12972)	인용 정정 200만 원 (대법 2015다 66298)
9	2014서울조정 1121, 1122 (각 정정)	금융 위원회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신청인 기관이 '천송이 코트'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서울중법 2014가합 577604)	-	-
10	2013경기조정 175 · 176 (정정 · 손해)	성남시 외 1명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의회 의정연수에 참석해 발렌 타인 21년산 21병을 선물하고 건배제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1500만 원 (성남지원 2013가합 205057)	인용 15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020764)	인용 1500만 원 (대법 2016다 206925)

16)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서울고법 2014나43368)

17)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반론보도를 선고 (서울고법 2015나21846)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11	2013서울조정 918 (정정)	A 외 179명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들이 준비를 해풍에 자연 건조하지 않고 소금을 쳐서 냉동하는 방식으로 가공해 보통 찹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 반론 (서울중법 2013가합 51136)	기각 (서울고법 2014나 9481)	기각 (대법 2014다 89089)
12	2013서울조정 1621~1626 (각 정정· 손배)	A	B	지역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부친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실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8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90803)	인용 정정 800만 원 (서울고법 2014나 43085)	-
13	2014서울조정 914~917 (각 정정· 손배)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과 학생의 친부인 신청인이 오래 전 이혼한 뒤 자식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오다가 참사 후 돈 때문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2467, 42481)	-	-
14	2013서울조정 1192·1193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외 1명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신청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에게 고가의 명절 선물을 또는 영전 축하금을 보냈으며 당사자가 수령사실을 시인하였고 매년 명절 선물비용으로 수익 원대를 지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정정 2,000만 원	인용 정정 7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74399)	인용 정정 700만 원 (서울고법 2014나 26493)	-
15	2013전북조정 35 (손배)	재단법인 A	주식회사 국제뉴스	신청인 장학재단의 기숙사 부지 매입 과정에 의혹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5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879)	인용 반론 (광주고법 2014나 2674)	인용 반론 (대법 2015다 31469)
16	2009서울조정 150 (정정·손배)	김상희 (국회의원)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이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반론 200만 원	기각 (서울중법 2009가합 68328)	인용 1,000만 원 (서울고법 2011나 36512)	기각(파기) ¹⁶⁾ (대법 2012다 19734)
17	2013서울조정 203 (정정)	주식회사 뉴스 투데이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목포투데이를 발행하는 신청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예술전시회 사업이 자체자금 없이 시 보조금만으로 시행됐고 특히 시비와 실효성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정정·반론	인용 정정 (서울북법 2013가합 1734)	인용 정정 (서울고법 2014나 23005)	-
18	2014서울조정 1035·1036 (정정·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채널에이	신청인 업체가 닭을 비위생적으로 해동하여 가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작권결정 - 정정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45602, 45619)	기각 (서울고법 2015나 2028423, 2028430)	기각 (대법 2016다 206529, 206536)
19	2014서울조정 776~779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에 해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작권결정 - 정정 기사삭제	인용 정정 8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34343, 34367)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20	2014서울조정 103·104 (정정·반론)	A	주식회사 노컷뉴스	모 대학 교수인 신청인이 학력을 위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4가합 4294)	-	-
21	2014서울조정 1050 (정정)	권은희	한국탐사 저널리즘 센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인 신청인이 후보등록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수십억 대 재산에 대해 축소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4가합 7209)	-	-
22	2014서울조정 882~887 (각 정정· 반론·손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인 교단이 이단, 사이버 단체이며, 대학가에 총말론을 유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1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8784)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32736)	계류 (대법 2016다 215752)
23	2014서울조정 839~884 (각 정정· 반론·손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국민일보 주식회사 외 1명	신청인 교단이 이단, 사이버 단체이며, 대학가에 총말론을 유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1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8593)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32729)	계류 (대법 2016다 215745)
24	2014서울조정 1493·1494 (추후·손배)	A	주식회사 연합뉴스	신청인이 위조한 판결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발당할 처지라고 보도하였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각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61499)	-	-
25	2014서울조정 1226 (손배)	A	주식회사 조선방송	경찰의 금수원 진입 관련 보도에서 신청인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300만 원 기사수정	인용 7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51744)	인용 700만 원 (서울고법 2015나 22542)	-
26	2012서울조정 827·828 (정정·손배)	A 외 139명	주식회사 문화방송	권재홍 앵커가 MBC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남법 2012가합 13294)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고법 2013나 35049)	기각(파기) ¹⁷⁾ (대법 2014다 28121)
27	2013서울조정 1488 (정정)	황교안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법무부 장관인 신청인이 과거 검사 시절 삼성 관련 수사 후 삼성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보도 2,000만 원 (서울중법 2013가합 75361)	인용 정정 보도 2,000만 원 (서울고법 2014나 43078)	-
28	2014서울조정 578·579 (정정·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 의사협회	주식회사 건치신문사	신청인 협회의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왜곡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정정·반론	인용 정정 200만 원 (서울남법 2014가합 7552)	-	-
29	2015서울조정 1476~1479 (각 정정· 손배)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외 1명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땡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2,0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2295, 2301)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50086, 2050093)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30	2014서울조정 1118·1119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조선방송	신청인이 전 구원파 신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방송은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반론 300만 원	인용 정정 6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45626)	조정성립 (서울고법 2015나 25466)	-
31	2014서울조정 11154~ 11161(각 정정·반론)	홍문종 (국회의원)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신청인이 총장으로 있는 ○○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593101)	-	-
32	2013대전조정 41~52 (각 정정· 손배)	A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신청인이 지난 2008년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 정정 2,000만 원 (대전지법 2013가합 6579)	인용 정정 2,000만 원 (대전고법 2014나 1292)	-
33	2011서울조정 1440, 1442 (각 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명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전주지법 2012가합 1831)	기각 (광주고법 - 전주 2013나 2578)	-
34	2014서울조정 1630~1635 (각 정정· 반론·손배)	주식회사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 회사가 해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고, 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5,0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585919, 515900, 515917)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60359, 2060366, 2060373)	-
35	2014서울조정 913 (손배)	A	주식회사 이엠티	신청인이 자신을 재림예수라 주장하며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500만 원 기사삭제 (부천지원 2014가합 9860)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60748)	-
36	2013서울조정 1011 (손배)	한국영화 기자협회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협회의 부회장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반발해 사퇴했으며, 해당 세미나에서 기업의 후원금으로 수상스키 타기 등의 행사를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4가단 5313358)	-	-
37	2014서울조정 1383·1384 (정정·손배)	대한안과 의사회	주식회사 문화방송	라식라섹 수술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일부 안과에서 환자관리에 소홀하다고 보도해 소속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4가합 51041)	-	-
38	2014서울조정 9012, 9013 (각 정정)	방위 사업청	주식회사 문화일보	방위사업청이 K-11 복합 소송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양산을 강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서울중법 2015가합 2800)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4204)	-
39	2015서울조정 2474 (정정)	보건 복지부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중등 손방에 맞춰 발표한 의약품 수출계약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5가합 2270)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0097)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40	2012강원조정 3·4 (정정·손배)	주식회사 A 외 2명	주식회사 강원신문사	신청인 회사들이 산림훼손, 폐 기물 불법매립 등 각종 불법행 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기업주 인 신청인은 세금포탈 등 부당 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정정 3,500만 원 (강릉지원 2012가합 1156)	인용 정정 3,500만 원 (서울고법 - 춘천 2014나 2902)	인용 정정 3,500만 원 (대법 2015다 74381)
41	2014서울조정 1619·1620 (정정·손배)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방송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 측의 입장을 제대로 전 달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인용 정정 기사수정 300만 원 (서울남법 2015가합 101543)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3621)	-
42	2015서울조정 2340 (정정)	한국 방송공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KBS 내부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를 막는 세력 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 정정· 반론 (서울남법 2015가합 3175)	계류 (서울고법 2015나 2074228)	-
43	2014서울조정 14841·14843 (정정·손배)	서초 경찰서 외 1명	주식회사 매일방송	신청인의 무리한 병원 압수수색 으로 전신마취를 한 상태의 환 자수술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7,000만 원 (서울중법 2015가합 9115)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00002)	-
44	2014서울조정 102 (손배)	A	주식회사 세이프 투데이 외 1명	신청인이 ○○협회장에 출마 할 의사가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가각 (서울중법 2014가단 5061763)	-	-
45	2015서울조정 2938~2941 (각 정정· 손배)	A	주식회사 덴탈저널	모 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운영 하는 치과가 네트워크치과에 인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 정정	인용 정정 500만 원 (서울중법 2015가합 17093)	-	-
46	2015서울조정 3189 (정정)	주식회사 문화방송	A 외 1명	신청인 언론사가 성완중 전 경 남기업 비지금 관련 보도를 하 면서 수사 대상을 야권으로 넓 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가각 (서울서법 2015가합 36372)	계류 (서울고법 2016나 2004820)	-

* 음영 처리된 사건은 2015년도에 선고된 것임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215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5-01-09	2013가단23894 2013가단29977	창원지법	1심	손배	이○○ 외 1명	기각
2	2015-01-09	2013가단22686 2013가단29984	창원지법	1심	손배	남○○ 외 1명	기각
3	2015-01-12	2014가단505907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문화일보 외 1명	인용
4	2015-01-14	2014가합3294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7명	기각
5	2015-01-14	2013가합52191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6	2015-01-14	2013가합52258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7	2015-01-14	2014가소31113 2014가소31120	성남지원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8	2015-01-16	2014나21283	서울동법	2심	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외 2명	기각
9	2015-01-21	2014가합45640 2014가합45657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10	2015-01-22	2014나32001	창원지법	2심	손배	최○○	기각
11	2015-01-22	2014가합6863	서울남법	1심	손배	(주)뉴스한국	인용
12	2015-01-23	2014다76168	대법	3심	정정	(주)한국교회문화사 외 1명	인용
13	2015-01-28	2014나21337	서울동법	2심	손배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외 2명	기각
14	2015-01-29	2012다107129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1명	인용
15	2015-02-03	2014가단5031014	서울중법	1심	손배	김○○	인용
16	2015-02-06	2014나6796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뉴데일리(주)	인용
17	2015-02-06	2014나2000602	서울고법	2심	손배	(주)한경닷컴 외 3명	인용
18	2015-02-12	2014다231873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서울신문사	기각
19	2015-02-12	2014다82859	대법	3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인용
20	2015-02-13	2014나13374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도시재생신문 외 3명	기각
21	2015-02-13	2013나20304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새누리당 외 4명	인용
22	2015-02-13	2014나2166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크리스천투데이	인용
23	2015-02-13	2014가단34900	수원지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24	2015-02-16	2012가단285157	서울중법	1심	손배	아시아투데이(주)	기각
25	2015-02-16	2013가단5122951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26	2015-03-13	2014나44917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매일방송 외 1명	인용
27	2015-03-18	2015가합501543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28	2015-03-18	2014가합564974	서울중법	1심	손배	한국방송사 외 9명	기각
29	2015-03-18	2014나20471	서울동법	2심	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외 3명	기각
30	2015-03-18	2014나21832	서울동법	2심	손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외 2명	기각
31	2015-03-20	2014나2016492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32	2015-03-20	2014나24114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인용
33	2015-03-24	2014나17045	서울중법	2심	손배	김○○ 외 2명	인용
34	2015-03-25	2014나59384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서울신문사	기각
35	2015-03-25	2014나1025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매일신문사 외 2명	기각
36	2015-03-26	2014다84954	대법	3심	손배	(재)씨비에스 외 3명	기각
37	2015-03-26	2014가합23277	안산지원	1심	정정	(주)시흥일보	인용
38	2015-03-27	2014나204500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2명	인용
39	2015-03-27	2014나2038713	서울고법	2심	정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인용
40	2015-04-01	2014가합6292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강남신문	기각
41	2015-04-01	2014가합577604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	(주)경향신문사	인용
42	2015-04-02	2014가합6054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외 3명	인용
43	2015-04-02	2013가합205057	생남지원	1심	정정/손배	(주)디지털생남일보 외 1명	인용
44	2015-04-02	2013가합20305 2014가합10883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45	2015-04-03	2014나2557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기각
46	2015-04-03	2014나2034698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미디어안성 외 3명	기각
47	2015-04-09	2014다89089	대법	3심	정정	(주)채널에이	기각
48	2015-04-10	2014나4308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장○○	인용
49	2015-04-10	2012가합9005	광주지법	1심	손배	김○○ 외 2명	인용
50	2015-04-10	2014나4544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충청일보재단 외 10명	기각
51	2015-04-15	2014가합42467 2014가합4248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52	2015-04-17	2014나2649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사사저널사	인용
53	2015-04-17	2014가합795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오마이뉴스 외 1명	기각
54	2015-04-17	2014나59391	서울중법	2심	손배	(주)헤럴드	인용
55	2015-04-21	2014나18697	서울중법	2심	손배	박○○	인용
56	2015-04-22	2014나47787	서울중법	2심	손배	이○○(선정당사자) 외 2명	인용
57	2015-04-22	2014가합58647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58	2015-04-23	2014나2674	광주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국제뉴스 외 2명	인용
59	2015-04-30	2014나43368	서울고법	2심 (환송 후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60	2015-05-01	2014나23005	서울고법	2심	정정	(주)시민일보사	인용
61	2015-05-08	2013가단5122920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중앙일보 외 1명	인용
62	2015-05-12	2014가단123123	서울중법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4명	기각
63	2015-05-13	2014가합45602 2014가합4561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
64	2015-05-13	2014가합34343 2014가합3436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인용
65	2015-05-13	2014가합593576	서울중법	1심	손배	정○○	인용
66	2015-05-14	2014가합4294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노컷뉴스	기각
67	2015-05-14	2013가합53243	고양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보도금지	윤○○	기각
68	2015-05-15	2015나4346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뉴스한국	인용
69	2015-05-15	2014가합7209	서울서법	1심	정정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기각
70	2015-05-15	2014가합4012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인용
71	2015-05-20	2013가합80677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7명	기각
72	2015-05-20	2013가합553779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외 5명	기각
73	2015-05-21	2014가합100325	안양지원	1심	정정/손배	남○○	인용
74	2015-05-22	2015나2005680	서울고법	2심	정정	한겨레신문(주)	기각
75	2015-05-22	2014가합10051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권○○	기각
76	2015-05-26	2014가단5118768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외 1명	인용
77	2015-05-28	2014가합24829	안산지원	1심	정정	(주)시흥일보	인용
78	2015-05-28	2012다29618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기각 (파기)
79	2015-05-29	2014나204076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80	2015-06-03	2013가합35005(본소) 2013가합36251	인천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1 외 3명	인용
81	2015-06-05	2014나3238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미디어 협동조합 외 2명	인용
82	2015-06-05	2015나1545	서울고법	2심	손배	황○○	인용
83	2015-06-08	2015카합50147	서울서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주)코리아타임스	인용
84	2015-06-09	2014나59407	서울중법	2심	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주)	기각
85	2015-06-11	2014가합918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외 2명	기각
86	2015-06-11	2014가합9084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기각
87	2015-06-11	2014가합8784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88	2015-06-11	2014가합859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국민일보(주) 외 2명	인용
89	2015-06-11	2014가합62421	수원지법	1심	정정	홍○○	기각
90	2015-06-12	2014가합4089	서부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주)제이티비씨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91	2015-06-17	2014가합61499	서울중법	1심	추후/손배	(주)연합뉴스	기각
92	2015-06-18	2014가소1136	진주지원	1심	손배	(주)하동저널 외 1명	인용
93	2015-06-19	2014나4529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김○○ 외 3명	인용
94	2015-06-19	2014나4355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외 1명	인용
95	2015-06-19	2014나205109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96	2015-06-23	2013다216624	대법	3심	정정/손배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주) 외 2명	기각
97	2015-06-24	2013다11850	대법	3심	정정/손배	최○○	인용
98	2015-06-24	2014나31218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충청투데이 외 6명	기각
99	2015-06-24	2014나67637	서울중법	2심	손배	최○○ 외 2명	인용
100	2015-06-26	2014가단41097	서울서법	1심	손배	진○○	인용
101	2015-06-26	2013가합23634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주)수도권일보사	인용
102	2015-06-26	2015나616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7명	기각
103	2015-07-01	2013가합34520	서울중법	1심	추후/손배	(주)뉴스시 외 1명	인용
104	2015-07-01	2014가합37038 2014가합37045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기각
105	2015-07-03	2014나52543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문화일보	인용
106	2015-07-08	2014가합51744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조선방송	인용
107	2015-07-08	2015나4440 2015나4457	수원지법	2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108	2015-07-09	2015다211470	대법	3심	손배	(주)매일방송 외 1명	인용
109	2015-07-09	2014가합10343	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주)서울신문사 외 1명	인용
110	2015-07-10	2015다21639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크리스천투데이	인용
111	2015-07-10	2014나2444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법률신문사 외 2명	인용
112	2015-07-15	2014가합57711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조선방송	인용
113	2015-07-16	2015나30309	서울서법	2심	손배	송○○	인용
114	2015-07-17	2014가합874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2명	기각
115	2015-07-23	2014가단519481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선경일보사 외 1명	인용
116	2015-07-23	2014다28121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파기)
117	2015-07-23	2015다24492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재)씨비에스	기각
118	2015-07-24	2014나4307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인터넷한국일보 외 3명	인용
119	2015-07-24	2014나5386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일요서울신문사 외 4명	인용
120	2015-08-11	2015나12795	서울중법	2심	손배	김○○	인용
121	2015-08-12	2015카합357	서울서법	1심	반론	(재)은누리선교재단	인용
122	2015-08-12	2014가합52472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천지일보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23	2015-08-12	2014가합3994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24	2015-08-12	2014가합2999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주)	기각
125	2015-08-12	2014가합10038	서울서법	1심	손배	(주)오마이뉴스 외 5명	기각
126	2015-08-12	2015카합404	서울서법	1심	반론	정○○	인용
127	2015-08-12	2014가단244018	서울서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28	2015-08-13	2014나2038218	서울고법	2심	손배	김○○ 외 6명	인용
129	2015-08-13	2015카합181	서울남법	1심	반론	(재)씨비에스 외 1명	인용
130	2015-08-13	2014가합755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건치신문사	인용
131	2015-08-13	2014가단11492	마산지원	1심	손배	문○○	기각
132	2015-08-13	2015가합200438	성남지원	1심	보도금지	(주)디지털성남일보	인용
133	2015-08-13	2014나203569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보도금지	고○○	인용
134	2015-08-13	2015가합2295 2015가합2301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인용
135	2015-08-19	2014가합54618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해명광고 게재	(유)광주전남타임즈 외 2명	인용
136	2015-08-19	2014가합4562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방송	인용
137	2015-08-19	2015다217232	대법	3심	손배	박○○	인용
138	2015-08-19	2014가합593101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한국일보사	기각
139	2015-08-19	2015나29458	서울중법	2심	손배	대한민국 외 4명	기각
140	2015-08-20	2014나1292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주)금강일보사	인용
141	2015-08-20	2014가합1215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142	2015-08-20	2014나2627	전주지법	2심	손배	황○○	기각
143	2015-08-21	2014나203210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뉴스시스	기각
144	2015-08-26	2015가합3070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안○○ 외 2명	기각
145	2015-08-26	2015가합1345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46	2015-08-27	2015가합22196	안산지원	1심	정정	(주)시흥일보	인용
147	2015-08-27	2013나2578	광주고법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148	2015-08-27	2013나2554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주)	인용
149	2015-08-28	2014나205080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청주방송 외 3명	인용
150	2015-08-28	2014가단82814	창원지법	1심	손배	김○○ 외 1명	인용
151	2015-09-03	2015가합102966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인용
152	2015-09-04	2015가합100806	서울동법	1심	정정/손배	권○○	기각
153	2015-09-09	2015가합829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엔에스피뉴스통신사	기각
154	2015-09-09	2015가합2224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오○○ 외 1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55	2015-09-09	2013가합518301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외 3명	인용
156	2015-09-10	2015다39913	대법	3심	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주)	기각
157	2015-09-11	2015나20108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세계닷컴 외 7명	인용
158	2015-09-11	2014나44878	부산지법	2심	손배	국민일보(주) 외 9명	인용
159	2015-09-23	2014가합585919 2015가합515900 2015가합515917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4명	인용
160	2015-09-23	2014가단186032	서울중법	1심	손배	김○○ 외 2명	기각
161	2015-09-25	2015다227185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62	2015-09-25	2014가합9860	부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주)이엠티 외 1명	인용
163	2015-09-25	2015나1297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강남신문	인용
164	2015-10-14	2014가합58772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헬로미디어 외 4명	기각
165	2015-10-15	2015다31513	대법	3심	손배	(주)미디어실크에이치 외 1명	인용
166	2015-10-16	2014가단5313358	서울중법	1심	손배	신○○ 외 3명	기각
167	2015-10-21	2014가합51041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168	2015-10-22	2014가단20176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중앙일보	인용
169	2015-10-28	2015가합51728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방송	인용
170	2015-10-28	2014나65662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법보신문사 외 1명	기각
171	2015-10-28	2014가합40909	서울서법	1심	손배	(주)시시매거진	인용
172	2015-10-29	2015다228508	대법	3심	손배	송○○	인용
173	2015-10-29	2015다225899	대법	3심	손배	최○○	인용
174	2015-10-29	2015다222999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175	2015-11-03	2013가단59911	서울중법	1심	손배	사단법인 대한치과 의사협회 외 2명	인용
176	2015-11-04	2014나3770	광주고법	2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177	2015-11-11	2015가합2800	서울중법	1심	정정	(주)문화일보	인용
178	2015-11-11	2015가합2270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주)	기각
179	2015-11-11	2014가합58612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180	2015-11-12	2015가합10803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1명	인용
181	2015-11-12	2015다231481 2015다231498	대법	3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182	2015-11-12	2015나15780	서울고법	2심 (환송 후심)	정정/손배	(주)매일경제신문사 외 1명	기각
183	2015-11-12	2014가합1994	안산지원	1심	손배	(주)광명저널 외 2명	인용
184	2015-11-18	2014나29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강원신문사 외 1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85	2015-11-19	2015가합73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송○○ 외 1명	기각
186	2015-11-19	2015가합101543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6명	인용
187	2015-11-20	2015나2009002 2015나200901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채널에이	인용
188	2015-11-20	2015나203076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89	2015-11-20	2014나7016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와이티엔 외 1명	인용
190	2015-11-24	2015가단5682	홍성지원	1심	손배	(주)와이미디어	기각
191	2015-11-24	2014나60421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뉴스 외 1명	기각
192	2015-11-25	2014가단446	의성지원	1심	손배	국민일보(주) 외 1명	기각
193	2015-11-25	2013가합7812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전주방송	인용
194	2015-11-26	2015가합3175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	(주)미디어오늘	인용
195	2015-11-26	2015다233746	대법	3심	정정/손배/보도금지	고○○	인용
196	2015-11-27	2015나2020986 2015나202099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197	2015-11-27	2015다47716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법률신문사 외 2명	인용
198	2015-12-02	2015가합911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매일방송	인용
199	2015-12-08	2014가단5061763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세이프투데이 외 1명	기각
200	2015-12-09	2015나793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문화일보 외 1명	인용
201	2015-12-10	2015다235780	대법	3심	정정/손배	(주)뉴스	기각
202	2015-12-10	2015다235827	대법	3심	손배	대한민국 외 4명	기각
203	2015-12-16	2013가단193514	서울중법	1심	손배	권○○ 외 1명	인용
204	2015-12-16	2015가합17093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덴탈저널	인용
205	2015-12-17	2015가합100162	안양지원	1심	정정/손배	안○○ 외 1명	인용
206	2015-12-17	2015나3642	서울서법	2심	손배	진○○	인용
207	2015-12-18	2015나200802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2명	기각
208	2015-12-18	2015나200803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209	2015-12-23	2015가합36372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안○○ 외 1명	기각
210	2015-12-23	2014가합58680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211	2015-12-23	2015다31469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국제뉴스 외 2명	인용
212	2015-12-24	2015가합11183	순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일크리에이티브 외 1명	인용
213	2015-12-30	2015나2032521 2015나2032545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1 외 3명	인용
214	2015-12-30	2015나2035964	서울고법	2심	정정	홍○○	기각
215	2015-12-30	2015나2028423 2015나202843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채널에이	기각